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12호

환경부 공고 제2014-492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환 경 부 장 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평가가능 대상이 공동주택·업무용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녹색건축 인증」평가항목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 취득 의무대상을 인증이 필수적인 용도로 한정하고자 함. 또한,「주택법」개정·시행('14.6.25)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이 법제화 되어 관련된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성능 평가항목 개정 (안 별표 1～7, 1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등급에 따라 '에너지성능' 분야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를 공동주택·업무용에서 모든 용도로 확대 반영

나. 공공건축물 인증취득 의무대상 용도 개정 (제7조)

공공건축물 인증취득 의무대상을 인증이 필수적인 용도로 한정

다. 공동주택성능등급 관련「주택법」신설사항 반영 (제5조)

「주택법」개정·시행('14.6.25)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이 법제화 되어 관련 규정 정비

라. 인증제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동일 근거법령(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내 인증제도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운영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운영관련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본「녹색건축 인증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771 / 팩스 : 044-201-5574 / e-mail : kop511@molit.go.kr)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환경부 고시 제2014- 호

「녹색건축 인증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녹색건축 인증기준」일부개정(안)

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칙 제6조 제3항·제4항·제5항(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3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증신청 건축물이 에너지효율향상 항목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 중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라 한다.)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다.”를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의”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로 하며,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를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건축물과 같다.”를 “건축물의 용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과 같다.”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심사 결과가 달라지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하고 제12조를 제15조로하며, 제9조, 제10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인증 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자체평가서 및 제출서류 등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인증 업무 지원)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 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 비용의 연간 사용계획을 작

성하여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증업무 운영 비용을 운영기관에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 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인증 신청 등)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표 13에 따른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부터 별표10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현행 제2조와 같음) ② 규칙 제6조 제3항·제4항·제5항(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④ (생략) ⑤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평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⑦ (생략)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평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 건축물이 에너지효율향상 항목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제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발급 시 포함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라 한다.)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다. ③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의 표시방법은 별표 16의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 표시항목에 따른다.	제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발급 시 포함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말한다. ③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표시방법은 별표 16의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따른다.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건축물과 같다.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① ———————————————————————————————— 건축물의 용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과 같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인증 수수료) ① (생략) ②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내야하는 인증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8조(인증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심사 결과가 달라지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신 설>	제9조(인증 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자체평가서 및 제출서류 등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제10조(인증 업무 지원)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 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 비용의 연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증업무 운영 비용을 운영기관에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 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9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생략)	제11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생략)	제12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현행 제10

	조와 같음)
제11조(인증 홍보) (생략)	제13조(인증 홍보)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 설>	제14조(운영세칙)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생략)	제15조(재검토기한)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표 (생략) <비고 1> (생략) <비고 2> '8. 주택성능분야(11개 항목)'은 녹색건축 인증 평가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만 표시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별표 2］복합건축물(주거)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3］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4］학교시설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5］판매시설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6］숙박시설 인증심사기준	［별표 1］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표 (현행과 같음) <비고 1> (현행과 같음) <비고 2> '8. 주택성능분야(11개 항목)'은 녹색건축 인증 평가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만 표시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별표 2］복합건축물(주거)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3］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4］학교시설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5］판매시설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제4조 관련) ［별표 7］소형주택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8］기존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9］기존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10］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11］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 (제4조 관련) ［별표 12］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4조 관련) ［별표 14］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제9조 관련) ［별표 15］인증 수수료 환불 비율(제9조 관련) ［별표 16］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 표시항목(제6조 관련)	［별표 6］숙박시설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7］소형주택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8］기존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9］기존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10］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별표 11］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 (제3조 관련) ［별표 12］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3조 관련) ［별표 14］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제8조 관련) ［별표 15］인증 수수료 환불 비율(제8조 관련) ［별표 16］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제5조 관련)
［별표 1］～［별표 16］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별표 1］～［별표 16］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현 행	개 정 안
［별표 1］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1］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1 토지이용 및 교통
평가범주	1.3 거주환경의 조성
평가기준	1.3.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주거단지내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은 주거단지의 사회적 지속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획요소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센터 또는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여부를 통해서 주거단지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여부
배 점	3점(평가항목)
	• 평점 =(가중치) × (배점)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1 토지이용 및 교통
평가범주	1.3 거주환경의 조성
평가기준	1.3.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주거단지내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은 주거단지의 사회적 지속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획요소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센터 또는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여부를 통해서 주거단지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여부
배 점	3점(평가항목)
	• 평점 =(가중치) × (배점) 커뮤니

산출기준

구분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계획 여부	가중치
1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10배 이상 설치+ 커뮤니티 공간 + 커뮤니티 센터를 계획한 경우	1.0
2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10배 이상 설치+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한 경우	0.7
3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05배 이상 설치	0.3
4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 면적으로 설치	0.1

- 커뮤니티 공간면적 : 세대당 0.3㎡/호 이상,
  단, 전체세대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는 0.15㎡/호 이상
  : 최소 50㎡이상, 최대 400㎡(계산상 400㎡이상일 경우에는 400㎡로 인정)
- 커뮤니티 공간은 근린교제가 가능

산출기준

구분	티 센터 및 시설·공간계획 여부	가중치
1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10배 이상 설치+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센터를 계획한 경우	1.0
2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10배 이상 설치+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한 경우	0.7
3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05배 이상 설치	0.3
4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 면적으로 설치	0.1

- 커뮤니티 공간면적 : 세대당 0.3㎡/호 이상,
  단, 전체세대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는 0.15㎡/호 이상
  : 최소 50㎡이상, 최대 400㎡(계산상 400㎡이상일 경우에는 400㎡로 인정)
- 커뮤니티 공간은 근린교제가 가능한 오픈공간으로서, 단지 내 중앙광장, 노천극장, 테마광장 등이 포함됨
- 커뮤니티 센터라 함은 단지 내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정시설 외에 별도로 조성된 건축공간으로서, 독립된 출입구와 부대시설(화장실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커뮤니티 센터의 최소면적은 500세대까지는 1m^2/세대, 5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0.5m^2/세대일 것, 단, 전체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m^2이하)의 경우 0.5m^2/세대로 함
-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주택건설기준

	한 오픈공간으로서, 단지 내 중앙광장, 노천극장, 테마광장 등이 포함됨 - 커뮤니티 센터라 함은 단지 내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정시설 외에 별도로 조성된 건축공간으로서, 독립된 출입구와 부대시설(화장실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커뮤니티 센터의 최소면적은 500세대까지는 1m²/세대, 5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0.5m²/세대 일 것, 단, 전체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m²이하)의 경우 0.5m²/세대로 함 -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영유아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을 의미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근로자 및 영구임대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제출서류	예비인증	- 단지계획도 - 커뮤니티 센터 또는 공간 계획 관련도면 - 각 평가대상 평면도 및 부분구적도(치수 명기), 설계 개요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을 의미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기준을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세부면적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조례를 우선 따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 별표1,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국토교통부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 단지계획도 및 설계개요 - 커뮤니티 센터 또는 공간 계획 관련도면 - 주민공동시설 관련 도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 현장설치 사진

현 행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 기준 2013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한다.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에 근거하여 평가

개 정 안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 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한다.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에

배 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산출기준	• 평점 =(가중치) × (배점)

구분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가중치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가중치
1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1.00	1급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1.00
2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0.80	2급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80
3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0.60	3급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60
4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0.40	4급	건축물에너지효율 4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

근거하여 평가

배 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산출기준	• 평점 =(가중치) × (배점)

구분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가중치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가중치
1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1.00	1급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1.00
2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0.80	2급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80
3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0.60	3급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60
4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0.40	4급	건축물에너지효율 4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7조 등에 따라 인증의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및 등급적용 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와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류	본인증	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 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현 행

〔별표 1〕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평점 =(가중치)x(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개 정 안

〔별표 1〕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평점 =(가중치)x(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산출기준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부하 ÷ (전체 급탕부하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관련 설계도서 및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및 설치비율 계산서 -현장설치 사진

산출기준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설비용량 ÷ (전체 급탕설비용량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관련 설계도서 및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및 설치비율 계산서 -현장설치 사진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7 실내환경
평가범주	7.1 공기환경
평가기준	7.1.3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여부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실내공기오염물질을 실외로 배출.제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공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환기성능을 확보한다.
평가방법	실내공기환경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환기량 및 일정수준 이상의 환기성능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환기설비의 설치여부를 확인
배 점	3점(평가항목)
	• 평점 = (가중치) × (배점) × 적용세대수/총세대수

구분	등급기준	가중치
1급	2급+자연 및 기계환기 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1.0
2	▪자연환기 : 3급+일정수준 이상[주1)]의 단열성능이 확보된 경우 ▪기계환기 : 4등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7 실내환경
평가범주	7.1 공기환경
평가기준	7.1.3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여부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실내공기오염물질을 실외로 배출.제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공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환기성능을 확보한다.
평가방법	실내공기환경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환기량 및 일정수준 이상의 환기성능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환기설비의 설치여부를 확인
배 점	3점(평가항목)
	• 평점 = (가중치) × (배점) × (적용세대수/총세대수)

구분	등급기준	가중치
1급	2급+자연 및 기계환기 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1.0
2급	▪자연환기 : 3급+일정수준 이상[주1)]의 단열성능이 확보된 경우 ▪기계환기 : 4등급+고성능 외기청정 필터 및 열교환기 또는 바닥	0.8

산출기준

급	급+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및 열교환기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가 설치된 경우	0.8
3급	▪자연환기 : 4급+일정수준 이상의 조건[주2)]에서 환기설비의 표면결로방지성능이 확보된 경우 ▪기계환기 : 4등급+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된 경우	0.6
4급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0.4

주1)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2.632W/(㎡.K)이하{열관류 저항 0.380㎡.K/W 이상}인 것(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주2) KS F 2295에 따라 항온항습실 공기온도 20℃, 상대습도 50% 및 저온실 온도 -10℃인 조건(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 자연환기필터,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및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의 경우, 단지내 전체 세대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방법

- 적용된 환기관련 설비 및 방식에 대한 설비설계시방서 확인
-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횟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방식 포함)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대상세대의 체적을 시간당 공기교환량(예:환기팬의 정격 풍량)으로 나눈 값을 환기횟수로 인정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KS B6141에 의한 시험결과 90.0%이상의 집진효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비색법 또는 광산란법 적용시)
- 열교환기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이상의 열회수율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산출기준

	열을 이용한 환기장치가 설치된 경우	
3급	▪자연환기 : 4급+일정수준 이상의 조건[주2)]에서 환기설비의 표면결로방지성능이 확보된 경우 ▪기계환기 : 4등급+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된 경우	0.6
4급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5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0.4

주1)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2.632W/(㎡.K)이하{열관류 저항 0.380㎡.K/W 이상}인 것(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주2) KS F 2295에 따라 항온항습실 공기온도 20℃, 상대습도 50% 및 저온실 온도 -10℃인 조건(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 자연환기필터,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및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의 경우, 단지내 전체 세대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방법

. 적용된 환기관련 설비 및 방식에 대한 설비설계시방서 확인

.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횟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방식 포함)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대상세대의 체적을 시간당 공기교환량(예:환기팬의 정격 풍량)으로 나눈 값을 환기횟수로 인정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KS B6141에 의한 시험결과 90.0%이상의 집진효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비색법 또는 광산란법 적용시)

. 열교환기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이상의 열회수율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여부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기술자료의 여부를 확인함

. 단지내에 정격용량이 다른 환기설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여부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기술자료의 여부를 확인함 - 단지내에 정격용량이 다른 환기설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예비인증	- 환기설비 시방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적용예정확인서 등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 환기설비 시방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적용예정확인서 등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현 행

〔별표 1〕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7 실내환경
평가범주	7.3 음환경
평가기준	7.3.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경량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평가방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가중치)×(배점) 경량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기준 (단위:dB)

구 분	등 급 기 준	가중치
1급	$L'_{n,AW} \leq 43$	1
2급	$43 < L'_{n,AW} \leq 48$	0.75
3급	$48 < L'_{n,AW} \leq 53$	0.5
4급	$53 < L'_{n,AW} \leq 58$,	0.25

개 정 안

〔별표 1〕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7 실내환경
평가범주	7.3 음환경
평가기준	7.3.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경량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평가방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가중치)×(배점) (단위:dB)

구 분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가중치
1급	$L'_{n,AW} \leq 43$	1
2급	$43 < L'_{n,AW} \leq 48$	0.75
3급	$48 < L'_{n,AW} \leq 53$	0.5
	53 <	

	표준바닥구조

※ L'n,AW : 역 A 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 설계도면: 기준층 바닥구조 단면상세도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한 인정바닥구조를 적용한 경우 해당 인정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 신청한 바닥구조(표준바닥구조 또는 인정바닥구조)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감리 보고서 등) - 표준바닥구조 중 완충재를 적용한 경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완충재 시험항목별 시험성적서

4급	$L'_{n,AW}$ ≤ 58, 라멘구조*	0.25

- L'n,AW :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

* 슬래브두께가 150㎜이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제15호의 조건에 적합한 라멘구조는 4급으로 표기하고, 동 고시 제4조 제2항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라멘구조는 해당 등급을 표기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 설계도면: 기준층 바닥구조 단면상세도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한 인정바닥구조 인정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 신청한 바닥구조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감리 보고서(슬래브두께, 완충재 등 주요 구성품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사진 등 포함) 등)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

현 행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7 실내환경
평가범주	7.3 음환경
평가기준	7.3.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중량 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평가방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개 정 안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7 실내환경
평가범주	7.3 음환경
평가기준	7.3.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중량 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평가방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가중치)×(배점) 중량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기준 (단위:dB)

구 분	등 급 기 준	가중치
1급	$L'_{i,Fmax,AW}$ ≤ 40	1
2급	40 < $L'_{i,Fmax,AW}$ ≤ 43	0.75
3급	43 < $L'_{i,Fmax,AW}$ ≤ 47	0.5
4급	47 < $L'_{i,Fmax,AW}$ ≤ 50, 표준바닥구조	0.25

※ L'n,AW : 역 A 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 설계도면: 기준층 바닥구조 단면 상세도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한 인정바닥구조를 적용한 경우 해당 인정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 신청한 바닥구조(표준바닥구조 또는 인정바닥구조)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감리 보고서 등) - 표준바닥구조 중 완충재를 적용한 경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완충재 시험항목별 시험성적서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가중치)×(배점) (단위:dB)

구 분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가중치
1급	$L'_{i,Fmax,AW}$ ≤ 40	1
2급	40 < $L'_{i,Fmax,AW}$ ≤ 43	0.75
3급	43 < $L'_{i,Fmax,AW}$ ≤ 47	0.5
4급	47 < $L'_{i,Fmax,AW}$ ≤ 50, 라멘구조*	0.25

- L'i,Fmax,AW : 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 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

* 슬래브두께가 150㎜이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제15호의 조건에 적합한 라멘구조는 4급으로 표기하고, 제4조 제2항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라멘구조는 해당 등급을 표기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 설계도면: 기준층 바닥구조 단면 상세도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한 인정바닥구조 인정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 신청한 바닥구조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감리 보고서(슬래브두께, 완충재 등 주요 구성품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사진 등 포함) 등)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

현 행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8 주택성능분야
평가범주	8.3 홈네트워크
평가기준	8.3.1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주택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을 종합적으로 제어한다.
평가방법	홈네트워크 인프라, 기기, 시설, 단지공용시스템 항목의 설치수준과 개수에 따라 항목별 등급을 산출하고 항목별 점수와 가중치 적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 등급기준 / 성능등급 1급 / 90점 이상 / ★★★★ 2급 / 70 ~ 89점 / ★★★ 3급 / 60 ~ 69점 / ★★ 4급 / 50 ~ 59점 / ★ ※ 점수 산출방법 = (인프라점수×a+기기점수×b+시설점수×c+단지공용시스템점수×d) * 부문별 점수 : 1급=20점, 2급=15점, 3급=10점 * 가중치(설치비용 고려) : a=1.5, b=1.3, c=1.2 d=1 평가대상 / 평가항목 인프라 / 등급 / 등급기준 1급 / 20점 2급 / 15점 3급 / 10점 ○ 단지망구성(5점) - 홈네트워크 서버에서부터 홈게이트웨이까지 전용망 구성 ○ 예비배관 및 세대내 배선(5점) - 세대단자함이나 세대통합관리반과 월패드 간 예비배관 굵기는 16C 이상(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와의 배선 공유시 22C 이상) - 홈게이트웨이 또는 월패드와 세대단자함이나 세대통합관리반 간, 그리고 세대에 설치하는 모든 홈네트워크 기기(항목2)간 4페어 이상

개 정 안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8 주택성능분야
평가범주	8.3 홈네트워크
평가기준	8.3.1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거주자들의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홈네트워크 인프라, 기기, 시설, 단지공용시스템의 평가대상별로 부여된 점수를 가중 합산하여 산정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점수 = (인프라점수×1.5+기기점수×1.3+시설점수×1.2+단지공용시스템점수) 구분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점수 / 성능등급 1급 / 90점 이상 / ★★★★ 2급 / 70점 이상 ~ 90점 미만 / ★★★ 3급 / 60점 이상 ~ 70점 미만 / ★★ 4급 / 50점 이상 ~ 60점 미만 / ★ 평가대상 / 평가대상별 산출기준 구분 / 인프라 / 점수 ① / 단지망 구성 / o 집중구내통신실(MDF)에서 세대까지 전용망 구성 / 5 o 세대단자함이나 세대통합관리반과 세대 단말기 간 예비배관 굵기는 16C 이

○ 단지내 배선(5점)
- 단지네트워크센터 또는 집중구내통신실(MDF)에서 단지에 설치하는 모든 단지공용시스템(항목 4)의 주기기간 4페어 이상
○ 확장 대응 구조나 배관설비(5점)
- 라멘구조방식(기둥보방식), 이중바닥, 이중천장, 덕트형 배관, 노출형 배관 적용, 무량판구조

산출기준

기기

등급	원격제어	감지기	CCTV	기타기기
1급	기기 3개 이상 추가 +3급	환경감지기, 동체감지기 +3급	CCTV 2개 장소 이상 추가 + 2급	기타기기 3개 이상
2급	기기 2개 이상 추가 +3급	환경감지기 또는 동체감지기 +3급	CCTV 1개 장소 이상 추가 + 3급	기타기기 2개
3급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놀이터 CCTV 승강기 CCTV 지하주차장 CCTV * 주동출입구 CCTV	월패드

* 지하주차장 미설치 단지는 평가 생략
○ 원격제어 추가기기(홈네트워크 월패드와 연동) : 디지털도어록, 정보가전, 전동커튼, 승강기호출, 일괄소등, 대기전력차단장치, 환기설비
○ 기타기기: 원격검진장비, LCD 통합리모콘, 웹패드, 무선AP, 홈뷰어, 서브폰

시설

등급	등급기준
1급	2개 평가시설 설치 + 3급
2급	1개 평가시설 설치 + 3급
3급	통신배관실(TPS실), 집중구내통신실(MDF), 방재실

○ 평가시설 : 세대통합관리반, 단지서버실, 단지네트워크센터
※ 단지네트워크센터 설치시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 단지서버실은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지공용시스템

등급	등급기준
1급	3개 평가시스템 설치 + 3급
2급	2개 평가시스템 설치 + 3급
3급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이 직접 연결되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시스템을 포함한다.
○ 평가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단지원격검진시스템, 차량위치

산출기준

인프라

②	예비배관 및 세대내 배선	o 홈게이트웨이 또는 세대단말기와 세대단자함이나 세대통합관리반 간, 그리고 세대에 설치하는 모든 홈네트워크 기기(항목2)간 4페어 이상	5
③	단지내 배선	o 단지네트워크센터, 집중구내통신실(MDF), 방재실 또는 단지서버실에서 단지에 설치하는 모든 단지공용시스템(항목4)의 주기기간 4페어 이상	5
④	확장대응 구조나 배관설비	o 이중바닥, 이중천장, 덕트형 배관, 노출형 배관 적용	5

구분	기기							
	원격제어	점수	감지기	점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점수	기타기기	점수
	③+원격제어		③+환경감지		③ + CCTV 2		③+기타기	

		인식시스템, 입주자 위치인식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부, 지경부, 방통위 공동고시 - 지능형 홈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지능형 홈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수립
제출서류	**예비인증**	- 단지망·세대망 구성도, 전기통신 설계도·상세도, 구조도, 시방서,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도, 주동 및 지하주차장 평면도, 관리동 평면도, 단지네트워크센터 평면도, 단지배치도, 단지공용시스템 구성도 및 상세도, 전기통신상세도, 시공계획서 등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산출기준

기기

①	추가기기 3개이상	8	기, 동체감지기	5	개 장소 이상 추가	4	기 3개이상	3
②	③+원격제어추가기기 2개	6	③+환경감지기 또는 동체감지기	4	③ + CCTV 1개 장소 추가	3	③+기타기기 2개	2
③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4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3	놀이터 CCTV 승강기 CCTV 지하주차장 CCTV 주동출입구 CCTV	2	월패드	1

○ 원격제어 추가기기(홈네트워크 월패드와 연동) : 디지털도어록, 정보가전, 전동커튼, 승강기호출, 일괄소등,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환기설비
○ 기타기기: 원격검진장비, LCD 통합리모콘, 웹패드, 무선AP, 홈뷰어, 서브폰

시설

구분	시 설	점수
①	③ + 평가시설 2개 이상 설치	20
②	③ + 평가시설 1개 설치	15
③	통신배관실(TPS실), 집중구내통신실(MDF), 방재실	10

○ 평가시설 : 세대통합관리반, 단지서버실*, 단지네트워크센터**
* 단지 내 집중구내통신실(MDF) 또는 방재실에 단지서버 설치면적(3㎡ 이상) 확보시 단지서버실은 설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네트워크센터 설치시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 단지서버실은 설치한 것으로 간주함

단지공용

구분	단지공용 시스템	점수
①	③ + 평가시스템 3개 이상 설치	20
②	③ + 평가시스템 2개 설치	15
③	주동출입시스템*	10

	시스템	* 주동출입시스템은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이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을 포함 함 ○ 평가시스템 :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단지원격검진시스템, 차량위치인식시스템, 입주자 위치인식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원격검침시스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시스템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공동고시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 단지망·세대망 구성도, 전기통신 설계도·상세도, 구조도, 시방서,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도, 주동 및 지하주차장 평면도, 관리동 평면도, 단지네트워크센터 평면도, 단지배치도, 단지공용시스템 구성도 및 상세도, 전기통신상세도, 시공계획서 등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현 행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8 주택성능분야
평가범주	8.4 방범안전
평가기준	8.4.1 방범안전 콘텐츠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거주자들이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방범안전 성능을 관련 설비설치에 근거한 방범안전 콘텐츠 측면에서 실천적으로 확보하여 주거만족도 제고
평가방법	세대와 단지에 방범안전 관련 설비.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위급상황이나 외부인의 출입통제.정보 등을 거주자에게 알려주어 방범안전 성능을 제고시키는 방식

구분	비상사태 알림 (가스누출, 침입자발생 등)	외부인 출입통제	성능등급
	세대 단말기 경보음, 관리소(경비실) 자동통보,	세대현관방문자영상확인, 주동방문자영상확인, 부재중방문자녹화, 방문차량통	

개 정 안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8 주택성능분야
평가범주	8.4 방범안전
평가기준	8.4.1 방범안전 콘텐츠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방범안전 설비 설치를 통해 거주자들의 안전성, 쾌적성 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세대와 단지에 방범안전 관련 설비.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위급상황이나 외부인의 출입통제.정보 등을 거주자에게 알려주어 방범안전 성능을 제고시키는 방식에 대하여 평가
산출기준	

구분	비상사태 알림 (가스누출, 침입자발생)	외부인 출입통제	성능등급
1급	2급 + 세대내 상태 영상확인(홈뷰어 등)	2급 + 거주자 차량 주차위치 확인, 홍체인식.음성인식.지문인식.얼굴인식 중 1개 이상 적용	★★★★
2급	3급 + 휴대폰 자동통보	3급 + 방문차량 통보	★★★
3급	4급 + 세대단말기.관리소(경비실) 자동통보	4급 + 주동 방문자 영상확인, 부재중 방문자 녹화	★★
4급	세대 단말기 비상경보*	세대현관 방문자 영상확인	★

* 세대 단말기 비상경보는 세대 내에 설치된 비디오폰 또는 월패드의 비상버튼기능 조작시 세대 단말기 및 관리소(경비실 포함)에 경보를 발하는 것을 말함

– 방범안전 콘텐츠: 세대와 단지에 방범안전 관련 설비.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위급상황이나 외부인의 출입통제.정보 등을 거주자에게 알려주어 방범안전 성능을 제고시키는 방식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산출기준		1급	휴대폰 자동통보, 세대내 상태 영상확인(홈뷰어 등)	보, 거주자차량주차위치확인, 홍체인식. 음성인식. 지문인식. 얼굴인식중 1개이상적용	★★★★	제출서류	예비인증	- 설계도면.시방서, 관련 기기.설비 설치도면, 방범안전관리센터(또는 방재실) 설치도면
		2급	세대 단말기 경보음, 관리소(경비실) 자동통보, 휴대폰 자동통보	세대현관방문자영상확인, 주동방문자영상확인, 부재중방문자녹화, 방문차량통보	★★★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세대현관방문자영상확				

3급	세대 단말기 경보음, 관리소(경비실) 자동통보	인, 주동방문자영상확인, 부재중방문자녹화	★★
4급	세대 단말기 경보음	세대현관방문자영상확인	★

※ 방범안전 콘텐츠: 세대와 단지에 방범안전 관련 설비.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위급상황이나 외부인의 출입통제.정보 등을 거주자에게 알려주어 방범안전 성능을 제고시키는 방식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예비인증**	콘텐츠 시나리오, 설계도면.시방서, 관련 기기.설비 내역서(설명서), 방범관리 매뉴얼, 방범안전 인력배치 계획서, 방범안전 관리업체 용역계획서, 방범안전 관리센터 설치도면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현 행

〔별표 2〕 복합건축물(주거)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 평가기준 2.1.1

녹색건축 인증 기준 2013	복합건축물(주거)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에 근거하여 평가
배 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 평점 =(가중치) × (배점)

구분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가중치
1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1.00
2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0.90
3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0.80
	평점합계의 평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가중치
1급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90
2급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예비)인증을	0.70

개 정 안

〔별표 2〕 복합건축물(주거)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 평가기준 2.1.1

녹색건축 인증 기준 2013-2	복합건축물(주거)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에 근거하여 평가
배 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산출기준	• 평점 =(가중치) × (배점)

구분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가중치
1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1.00
2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0.90
3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0.80
4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0.70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가중치
1급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90
2급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70

산출기준						
	4급	균이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0.70		취득한 경우	
	5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0.60	3급	건축물에너지효율3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50
	6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0.50			
	7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0.40	4급	건축물에너지효율4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 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 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 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5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0.60	3급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50
6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0.50			
7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0.40	4급	건축물에너지효율 4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7조 등에 따라 인증의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및 등급적용 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와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현 행

〔별표 2〕 복합건축물(주거)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복합건축물(주거)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	0.8

개 정 안

〔별표 2〕 복합건축물(주거)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복합건축물(주거)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	

산출기준		한 경우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부하 ÷ (전체 급탕부하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산출기준	3급	탕설비용량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설비용량 ÷ (전체 급탕설비용량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본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현장설치 사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본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현장설치 사진

현 행

〔별표 2〕 복합건축물(주거)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복합건축물(주거)
평가부문	7 실내환경
평가범주	7.3 음환경
평가기준	7.3.1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평가방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 평점 =(경량충격음 가중치)×(배점)+(중량충격음 가중치)×(배점) (배점: 경량충격음 1점, 중량충격음 1점) 1) 경량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

개 정 안

〔별표 2〕 복합건축물(주거)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복합건축물(주거)
평가부문	7 실내환경
평가범주	7.3 음환경
평가기준	7.3.1 층간 경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평가방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 평점 = (경량충격음 가중치)×(배점)+(중량충격음 가중치)×(배점) (배점: 경량충격음 1점, 중량충격음 1점) 1) 경량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기준 (단위:dB)

산출기준

기준 (단위:dB)

구 분	역 A 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L'_{n,AW}$)	가중치
1급	$L'_{n,AW} \leq 43$	1
2급	$43 < L'_{n,AW} \leq 48$	0.75
3급	$48 < L'_{n,AW} \leq 53$	0.5
4급	$53 < L'_{n,AW} \leq 58$, 표준바닥구조	0.25

2) 중량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기준

구분	역 A 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L'_{i,Fmax,AW}$)	가중치
1급	$L'_{i,Fmax,AW} \leq 40$	1
2급	$40 < L'_{i,Fmax,AW} \leq 43$	0.75
3급	$43 < L'_{i,Fmax,AW} \leq 47$	0.5
4급	$47 < L'_{i,Fmax,AW} \leq 50$, 표준바닥구조	0.25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열악한 성능값을 대상 건축물의 평점으로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 설계도면: 기준층 바닥구조 단면 상세도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한 인정바닥구조를 적용한 경우 해당 인정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 신청한 바닥구조(표준바닥구조 또는 인정바닥구조)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감리 보고서 등) - 표준바닥구조 중 완충재를 적용한 경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는 완충재 시험항목별 시험성적서

산출기준

구 분	역 A 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L'_{n,AW}$)	가중치
1급	$L'_{n,AW} \leq 43$	1
2급	$43 < L'_{n,AW} \leq 48$	0.75
3급	$48 < L'_{n,AW} \leq 53$	0.5
4급	$53 < L'_{n,AW} \leq 58$, 라멘구조*	0.25

2) 중량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가기준

구분	역 A 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L'_{i,Fmax,AW}$)	가중치
1급	$L'_{i,Fmax,AW} \leq 40$	1
2급	$40 < L'_{i,Fmax,AW} \leq 43$	0.75
3급	$43 < L'_{i,Fmax,AW} \leq 47$	0.5
4급	$47 < L'_{i,Fmax,AW} \leq 50$, 라멘구조※	0.25

* 슬래브두께가 150㎜이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 제15호의 조건에 적합한 라멘구조는 4급으로 표기하고, 제4조 제2항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라멘구조는 해당 등급을 표기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열악한 성능값을 대상 건축물의 평점으로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 설계도면: 기준층 바닥구조 단면 상세도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한 인정바닥구조인정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 신청한 바닥구조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감리 보고서(슬래브두께, 완충재 등 주요 구성품의 시공상태를 확인한 사진 등 포함) 등)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 제5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

현 행

〔별표 3〕 업무용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 기준 2013	업무용 건축물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 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 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에 근거하여 평가
배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 평점 =(가중치) × (배점)

구분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가중치
1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1.00
2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0.90
3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0.80
	평점합계의 평균이 80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가중치
1급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90
2급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예비)인증을	0.70

개 정 안

〔별표 3〕 업무용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 기준 2013-2	업무용 건축물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 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에 근거하여 평가
배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산출기준	• 평점 =(가중치) × (배점)

구분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가중치
1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1.00
2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0.90
3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0.80
4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 ~85점	0.70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가중치
1급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90
2급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70

산출기준	4급	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0.70		취득한 경우	
	5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0.60	3급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50
	6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0.50			
	7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0.40	4급	건축물에너지효율 4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 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 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 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미만인 경우				
	5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0.60	3급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50
	6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0.50			
	7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0.40	4급	건축물에너지효율 4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7조 등에 따라 인증의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및 등급적용 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와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현 행

〔별표 3〕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업무용 건축물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난방, 냉	

개 정 안

〔별표 3〕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업무용 건축물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	0.6

산출기준	3급	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부하 ÷ (전체 급탕부하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

산출기준		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설비용량 ÷ (전체 급탕설비용량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 현장설치 사진

		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현장설치 사진

현 행

〔별표 4〕학교시설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학 교 시 설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배 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	가중

개 정 안

〔별표 4〕학교시설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학 교 시 설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에 근거하여 평가
배 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가중치
1	평점합계의 평균이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가중치
1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산출기준	분	점 합계의 평균	치
	1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1.00
	2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0.90
	3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0.80
	4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	0.70
	5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0.60
	6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	0.50
	7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70점 미만인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각 단위건축물별로 산출하며, 평점합계의 평균은 각 단위건축물의 바닥면적 가중평균에 의해 산출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

산출기준	1 급	95점 이상인 경우	1.00	1 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90
	2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0.90	2 급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70
	3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0.80		
	4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	0.70	3 급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50
	5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0.60		
	6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	0.50	4 급	건축물에너지효율 4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40
	7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70점 미만인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

		지관리공단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7조 등에 따라 인증의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및 등급적용 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와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현 행

〔별표 4〕 학교시설 인증심사기준 (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학 교 시 설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개 정 안

〔별표 4〕 학교시설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학 교 시 설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	0.6

산출기준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부하 ÷ (전체 급탕부하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

산출기준		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설비용량 ÷ (전체 급탕설비용량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 현장설치 사진

		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현장설치 사진

현 행

〔별표 5〕판매시설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 평가기준 2.1.1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판매시설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배 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 평점 = (가중치) × (배점)

개 정 안

〔별표 5〕판매시설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 평가기준 2.1.1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판매시설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에 근거하여 평가
배 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합계의 평균	가중치
1	평점합계의 평균이	1.00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가중치
1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0.90

산출기준	구분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가중치
	1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1.00
	2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0.90
	3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0.80
	4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	0.70
	5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0.60
	6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	0.50
	7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70점 미만인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각 단위건축물별로 산출하며, 평점합계의 평균은 각 단위건축물의 바닥면적 가중평균에 의해 산출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명세, 창호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명세, 창호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

산출기준					
	1급	95점 이상인 경우		1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2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0.90		
	3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0.80	2급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70
	4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	0.70		
	5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0.60	3급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50
	6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	0.50		
	7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70점 미만인 경우	0.40	4급 건축물에너지효율 4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7조 등에 따라 인증의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및 등급적용 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와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현 행

〔별표 5〕 판매시설 인증심사기준 (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판매시설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수준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난방, 냉	

개 정 안

〔별표 5〕 판매시설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판매시설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수준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	0.6

산출기준	3급	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부하 ÷ (전체 급탕부하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

산출기준		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설비용량 ÷ (전체 급탕설비용량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 현장설치 사진

		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현장설치 사진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숙박시설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숙박시설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배 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 평점 =(가중치) × (배점) 구분 /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 가중치 평점합계의 평

〔별표 6〕 숙박시설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숙박시설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에 근거하여 평가
배 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 평점 =(가중치) × (배점) 구분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 가중치 1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 / 1.00 구분 / 에너지효율등급 / 가중치 1급 /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예비) / 0.90

산출기준	1 급	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1.00
	2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0.90
	3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0.80
	4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	0.70
	5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0.60
	6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	0.50
	7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70점 미만인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각 단위건축물별로 산출하며, 평점합계의 평균은 각 단위건축물의 바닥면적 가중평균에 의해 산출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사진 등)

산출기준		인 경우		인증을 취득한 경우	
	2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0.90	2 급 건축물에너지효율 2 등급 (예비) 인증을 취득한 경우	0.70
	3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0.80		
	4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	0.70	3 급 건축물에너지효율 3 등급 (예비) 인증을 취득한 경우	0.50
	5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0.60		
	6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	0.50	4 급 건축물에너지효율 4 등급 (예비) 인증을 취득한 경우	0.40
	7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70점 미만인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7조 등에 따라 인증의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및 등급적용 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

	본인증	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와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현 행

〔별표 6〕 숙박시설 인증심사기준 (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숙박시설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난방, 냉	

개 정 안

〔별표 6〕 숙박시설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숙박시설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	0.6

산출기준	3급	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부하 ÷ (전체 급탕부하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

산출기준		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설비용량 ÷ (전체 급탕설비용량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 현장설치 사진

		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현장설치 사진

현 행

〔별표 7〕 소형주택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소 형 주 택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한다.
평가방법	건축물 각 부위의 성능기준을 근거로 평가
배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등급	부위별 기준										가중치
	창호의 열관류율 (W/㎡K)	문의 열관류율 (W/㎡K)	창호 및 문면적/난방면적비 (%)	벽체의 열관류율 (W/㎡K)	지붕의 열관류율 (W/㎡K)	바닥의 열관류율 (W/㎡K)	단열형태	기밀성 (50 Pascal)	보일러의 효율 (%, 총발열량 기준)	폐열회수환기장치(고효율기자재) 설치여부	
1급	1.0	1.6	20% 이하	0.15	0.15	0.15	외단열	0.6 회/시간	87% 이상	유	1.0
2급	1.4	2.0	20% 이하	0.20	0.16	0.19	외단열	-	87% 이상	유	0.85
3급	1.8	2.4	25% 이하	0.25	0.17	0.23	-	-	87% 이상	-	0.70
4급	2.1	2.8	25% 이하	0.30	0.18	0.27	-	-	87% 이상	-	0.55
5급	2.4	3.2	25% 이하	0.36	0.20	0.30	-	-	87% 이상	-	0.40

※ 창호, 문, 벽체, 지붕, 바닥의 열관류율은 최소값을 기준으로 평가
※ 세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란 규정에서 고효율 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LED는 제외한다.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개

〔별표 7〕 소형주택 인증심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 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평가방법	1. 건축물 각 부위의 성능기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
배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평가방법1 : 건축물 각 부위

등급	창호의 열관류율 (W/㎡K)	문의 열관류율 (W/㎡K)	창호 및 문면적/난방면적비 (%)	벽체의 열관류율 (W/㎡K)
1급	1.0	1.6	20% 이하	0.15
2급	1.4	2.0	20% 이하	0.20
3급	1.8	2.4	25% 이하	0.25
4급	2.1	2.8	25% 이하	0.30
5급	2.4	3.2	25% 이하	0.36

※ 창호, 문, 벽체, 지붕, 바닥
※ 세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 고효율 조명기기로 정의되 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LE
※ 건물전체의 가중치는 취득 정됨

• 평가방법2 : 건축물 에너지

에너지효율 등급	1등급 이상
가중치	1.0

※ 평가방법 1, 2 중 유리한 점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예비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또는 관련근거자료 (도면, 성적서 또는 단열재 물성 및 열관류율 계산서 등)
	본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또는 관련근거자료 (도면, 성적서 또는 단열재 물성 및 열관류율 계산서 등)

참고자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출서류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 (도면, 성적서 또는 단열재
	본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도면, 성적서 또는 단열재

현 행

〔별표 8〕 기존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기존 공동주택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가산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개 정 안

〔별표 8〕 기존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기존 공동주택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가산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	0.8

산출기준	2급	급탕부하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

산출기준		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설비용량 ÷ (전체 급탕설비용량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부하 ÷ (전체 급탕부하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관련 설계도서 및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및 설치비율 계산서 -현장설치 사진

참고자료		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관련 설계도서 및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및 설치비율 계산서 -현장설치 사진

현 행

〔별표 9〕 기존 업무용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기존 업무용 건축물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가산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0.6

개 정 안

〔별표 9〕 기존 업무용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기존 업무용 건축물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가산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	

산출기준

산출기준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부하 ÷ (전체 급탕부하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현장설치 사진

	4급	설비용량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설비용량 ÷ (전체 급탕설비용량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현장설치 사진

현 행

〔별표 10〕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그 밖의 건축물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배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산출기준	• 평점 =(가중치) × (배점)

구분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가중치
1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1.00
2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0.90
3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0.80
4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	0.70
5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0.60
6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75점 미만인 경우	0.50
7 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70점 미만인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각 단위건축물별로 산출하며,

개 정 안

〔별표 10〕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그 밖의 건축물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에 근거하여 평가
배 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산출기준	• 평점 =(가중치) × (배점)

구분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가중치
1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1.00
2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95점 미만인 경우	0.90
3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90점 미만인 경우	0.80
4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 이상~85점 미만인 경우	0.70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가중치
1급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90
2급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70
3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	

	평점합계의 평균은 각 단위건축물의 바닥면적 가중평균에 의해 산출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 용도에 맞춰 평가하되, 그 밖의 건축물은 업무용(사무)으로 간주하여 평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

5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0.60	3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50
6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0.50	4급	건축물에너지효율 4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40
7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제출서류	예비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7조 등에 따라 인증의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및 등급적용 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와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0]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4조 관련)	[별표 10] 그 밖의 건축물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그 밖의 건축물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그 밖의 건축물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	0.6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본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2% 이상을 담당	0.4

산출기준			설을 설치한 경우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부하 ÷ (전체 급탕부하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예비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

			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5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2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설비용량 ÷ (전체 급탕설비용량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관련 설계도서,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현장설치 사진

제출서류	인증	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설치비율 계산서 -현장설치 사진

현 행	개 정 안

〔별표 12〕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4조 관련)

1. 공동주택

등급	심사점수		비고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69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61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53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2.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

등급	심사점수		비고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80점 이상	75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70점 이상	65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60점 이상	55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3. 소형주택

등급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별표 12〕 인증등급별 점수기준(제3조 관련)

1. 공동주택

등급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2.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

등급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그린1등급)	80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70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60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3. 소형주택

등급	심사점수	비고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100점 만점
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4.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건축물

등급	심사점수		비고
	기존 공동주택	기존 업무용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69점 이상	75점 이상	100점 만점
우수(그린2등급)	61점 이상	65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3점 이상	55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45점 이상	45점 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표 16〕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 표시항목(제6조 관련) 표 (생략) ※ 세부 성능항목에 대한 성능등급은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단지별 최소 등급을 ★에서 ★★★★로 표시한다.	〔별표 16〕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제5조 관련) 표 (현행과 같음) ※ 세부 성능항목에 대한 성능등급은 〔별표 1〕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단지별 최소 등급을 ★에서 ★★★★로 표시한다.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는 경우, "주택품질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라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분란의 필수에 대하여 4등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	(삭제)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

1. 공동주택명 :
2. 신청자 :
3. 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화장실 급배수 소음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공용부분	
내구성		
지속가능한 자원활용(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비내력벽 재사용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자연지반 녹지율	
	연계된 녹지축 조성	
	비오톱 조성	
생태적 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세대내 일조확보율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자연통풍 확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우수 이용	
	중수도 설치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공용부분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사용자 매뉴	

	보 여부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저감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 제품 사용여부	
	재료의 탄소 배출량 정보 표시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얼 제공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제연설비	
	내화 성능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복도 및 계단 유효폭	
	피난설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녹색건축 인증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인)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 - 3771